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동령 제47조의 4의 규정에는 위원장의 직무, 동령 제47조의 5의 규정에는 회의·의결정족수, 동령 제47조의 6의 규정에는 의견청취, 동령 제47조의 7의 규정에는 간사설치근거, 제47조의 8의 규정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수당지급근거, 제47조의 10의 규정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의 지방자치단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시행령에 규정하지 않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의견청취, 제7조 수당등의 규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140조의 2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각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음.

다만, 본 조례안에는 제8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규정과 제9조 운영세칙조항을 설치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완적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다. 외국의 사례 및 타시·도 현황

○외국의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90년 현재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426개 법상협의회, 1,776개의 사실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자치단체조합이 2,904개조합, 지사·자치성장관의 분쟁조정이 있으며, 자치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의 조정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조직이 있어 자치성과 도도부현에 각각 설치되고 있음.

○미국에서도 지방정부간조정법, 공공이익집단정부협의회, 광역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ADR제도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내무부에서는 1994.7.21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인 각 시·도 준칙을 시달하였고, 각 시·도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11개 시·도는 9월말에 조례를 제정, 현재위원 위촉 등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경기·경북·인천 3개 시·도는 10월 31일까지 조례제정이 완료된 실정임.

라. 결 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제정의 근거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이미 규정한 내용이며, 다만, 제8조 회의록작성·비치업무와 제9조 보완규정인 운영세칙조항만 새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제정체제상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사료됨.

○내무부에서는 본 준칙을 1994.7.22 각 시·도에 시달하여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를 10월 31일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시에서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됨.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第2案인 서울特別市副市長資格基準에 관한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1. 위원회 회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서울특별시장(94.11.21)

나. 회부일자: 94.11.22

다. 상정일자: 제1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94.11.25)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2인

<p>의 부시장 중 지방정무직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 지방정무직인 부시장의 자격은 아래와 같음 (안 제2조)</p> <p>(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p> <p>(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p> <p>(3)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p> <p>다.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li> <li>○예산조치 : 별도 필요없음</li> <li>○합 의 : 필요없음</li> <li>○기 타 : 조례안 (별첨)</li> </ul> <p>3. 검토의견</p> <p>가. 제정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항에 보면 특별시와 직할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li> <li>제2항에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을 둘 수 있음.</li> <li>이 경우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자격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근거규정을 두었음.</li> <li>○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시장·부지사의 직급과 수) 제1항에는 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직할시의</li> </ul>	<p>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관리관 또는 이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p> <p>제2항에는 법 제10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2인으로 하되, 부시장 1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다른 1인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94.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중인 바, 이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부시장의 직급은 정무직국가공무원 1인과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조직 및 업무의 방대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2인으로 하려는 근거와 정무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법시행령부칙 제2항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국가직부시장은 기획관리, 감사, 내무, 재무, 보건환경, 가정복지, 문화관광, 민방위, 소방업무를 분장하고, 지방직부시장은 산업경제, 교통, 도시계획, 주택, 도로 상하수도업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여 관장업무를 지정하고 있음.</li> </ul> <p>나. 서울시 부시장제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시장의 직무는 1949.7.4 직제 공포, 동년 1949.8.15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부시장 1인을 두기로 하고,</li> <li>○1962.1.27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일반행정업무와 현업적 기술업무로 나누어 제1·2부시장을 두게 되었고,</li> <li>○1981.11.9 정부의 기구축소방침으로 통합되어 부시장 1인으로 운영.</li> <li>○1994.3.16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 및 1994.11.21 동법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중인 것을, 정무직국가공무원 1인과 정무직지방공무원 1인을 두어 2인의 부시장을 두는 근</li> </ul>
---	---

<p>거를 마련하고 있음.</p> <p>다. 주요내용</p> <p>○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안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자격기준, 부칙으로 내용이 단순한 조례로써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제정이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p> <p>○제2조 자격기준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이상의 공무원에 3년이상 재직자</li> <li>2. 2급이상의 공무원에 6년이상 재직자</li> <li>3.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음.</li> </ol> <p>○차관급 지방정무직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최초이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외청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원, 부, 처의 국가정무직 자격도 법제화된 선례가 없음.</p> <p>○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위상과 1,100만 명을 포용하고 있는 대도시인 서울시의 조직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지방정무직공무원인 부시장 1인을 더 보하도록 함 임법취지로 보아 국가정무직부시장 재임자의 경력수준과 정부산하 외청기관의 국가정무직 차관급 자격기준을 반영하고, 특별히 민선시장의 임용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기타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3항을 설정하였음.</p> <p>라. 결 어</p> <p>○서울특별시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p> <p>○서울특별시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1,100만 시민을 포용하고 있는 방대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가정무직인 부시장과 지방정무직부시장 2인을 보하도록 규정함</p>	<p>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일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도 국가직 외청의 선례에 유사할 뿐 아니라, 국가정무직 재직자의 경력수준과 비슷하고, 새로 선출되는 민선시장의 임용권 행사에 장애가 없는 자격기준으로 보아짐.</p> <p>○특히,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된 것은 입법제정체제상 합리적이라고 사료됨.</p> <p>.....</p> <p>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p> <p>이어서一括 上程된 두 案件에 대한 委員 님들의 質疑와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 및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십시오.</p> <p>權寧斌委員, 質疑하십시오.</p> <p>○權寧斌委員 지금 이 委員會 名稱을 紛爭調整委員會라고 했는데 여기 委員會 機能에 보면 自治區 相互間, 區廳 相互間 紛爭事項하고 自治區 行政協議會의 協議事項 調整도 나와 있거든요.</p> <p>○內務局長 金東勳 네.</p> <p>○權寧斌委員 그래서 저는 이 紛爭이라는 말이 名稱이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 個人  생각으로는 서울特別市自治區仲裁委員會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自治區에서 紛爭도 다루지만 또 뭐 協議會 協議事項도, 이런 意見이 들고요. 고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上位法에 明示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p> <p>또 하나 第3條第3項2에 보면 地方自治團體間 紛爭發生 素地가 있는 分野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7人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地方自治團體間 紛爭 發生이 현재까지 그렇게, 自治화된 지 얼마되지도 않고, 우리 事例가 별로 없었지 않느냐? 차</p>
--	---